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과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제 학사 관리도 전문대학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전문대학과 달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전공대학에 다수 개설된 이·미용, 뷰티 등 학과의 경우 산학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학교기업 제도를 운영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공대학을 계약학과·학교기업 운영이 가능한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안 제2조제2항 제11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384